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6. 14 선고 2022가단2041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전종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김영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용국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20.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4. 1. 접수 제149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는 2010. 12. 14.부터 2019. 9. 11.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는 D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D의 형이다.

(2) D는 2012. 12. 25.부터 2019. 8. 20.까지 179회에 걸쳐 원고의 자금 합계 1,211,273,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고합36호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2022. 1. 27. D에 대해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며, D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C가 D의 횡령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가합5204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22. 10. 27. ‘원고에게 C는 D와 공동하여 1,312,943,329원 중 513,967,00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C는 2020. 3.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매도(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하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4. 1. 접수 제1490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가액(원)	인정근거
1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118,000,000	갑4
2	충주시 F아파트 G호 중 1/2 지분	102,500,000	갑19
3	H조합 예금	9,836,313	갑14
합계		230,336,313	
소극재산		가액(원)	인정근거
1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사건 피보전채권)	513,967,003	갑15
합계		513,967,00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제10호증, 제14호증, 제15호증, 제19호증, 을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

(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 지분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 의사도 추정된다.

(나) 피고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실제 피담보채권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C 소유 지분의 가액은 96,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이고,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위와 같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2. 19. 접수 제523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2. 19. 접수 제52347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I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1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의 가액이 118,000,000원(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배척하고 피고 주장의 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의 가액 또한 118,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물상보증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여부 판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피담보채권액이라고 할 것인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 가액에 미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사해의사

피고는 C의 채무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을 인수하게 된 경위 및 매수대금이 염가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되므로 수익자에게 자신이 선의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C의 배우자인 D와 형제로서 C와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피고와 D, C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D의 형사재판 및 원고와 D, C 사이의 민사재판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D, C가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것이라는 점도 인지하였을 것인 점, ③ 원고는 D와 C를 상대로 2020. 3. 19.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이 2020. 3. 30. D와 C에게 송달되자, 피고와 C는 그 다음날 바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4. 1. 접수 제14903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북 충주시

제상가동

[도로명주소] 충북 충주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1.2층 근린생활시설

지 1층 1720.9601m²

1층 1574.0045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충청북도 충주시

대 18700.3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 구조 54.053m²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8700.3분의 17.7734

